

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비판 및 제도개선 요구 방향

탁선호(금속노조 법률원)

I.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비판

■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통과

-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, 2022년 3월 25일 시행
 - 제1장(총칙)
 - 제2장(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)
 - 제3장(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)
 - 제4장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)
 - 제5장(온실가스 감축 시책)
 - 제6장(기후위기 적응 시책)
 - 제7장(정의로운 전환)
 - 제8장(녹색성장 시책)
 - 제9장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)
 - 제10장(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)
 - 제11장(보칙)
 - 부칙

I.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비판

1. 관료 및 전문가들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

■ 제3조 탄소중립·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

7.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**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**를 보장한다.

■ But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역할의 사례

■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세대, 노동자,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

- 기술관료집단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
- 관료, 기업, 전문가들의 위원회
- 형식적인 국민 의견 수렴

1.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비판

2. 기후위기 시대의 국민 : 녹색소비자 만들기

■ 기업들의 책무 : 녹색경영을 통한 사업활동

“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·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 ”

■ 국민들의 책무 : 녹색생활 실천

“생산 ·소비 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”

■ 기후위기 시대의 “자본 - 시민”의 관계 : “ESG경영 - 녹색소비자”

☞ 기후위기 대응과정을 정치화하는 방식, 또는 정치를 제거하는 방식

I.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비판

3.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전략이 아닌 경제성장전략 :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시즌2

■ 이명박 정부 ‘저탄소 녹색성장’ 전략

- 배경 : 기후변화, 교토의정서체제, 신재생에너지시장 성장 등, 시장 창출 기회
-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/확대하려는 경제성장전략

■ 문재인 정부의 ‘탄소중립 녹색성장’ 전략

- 기후위기,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, 탄소국경조정세 등 도입, 시장 환경 변화
- 변화된 기후위기 국면 및 시장환경에서의 경제성장전략
- 정의로운 전환, 기후정의 형식적 삽입

I.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비판

4.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노동전환의 문제점

■ 정의로운 전환, 기후정의 : 법전의 추상적인 문구에 불과

- 실제 2022년 기후대응기금 2.5조원(신규예산 0.7조원)
- 재원의 규모, 조성 방식, 사업내용은 정의로운 전환이나 기후정의 실현과 거리가 멀

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(2021. 7. 21.)

- 한국판 뉴딜 2.0 후속조치
- 내용은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.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無
- 2022년 예산안 '계층, 산업, 지역의 공정한 전환'에 겨우 5천억원 편성

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(2021.9.14.)

-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노동전환 지원 원칙 명시
- 사업주가 결정하는 사업구조 개편(노동전환=구조조정)에 대한 지원

II. 기후위기 입법안들의 한계?

1. 대안반영 폐기된 기후위기 관련 입법안

■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통과로 8개 법안 폐기

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(이소영의원), ②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(유의동의원), ③ 기후위기 대응법안(안호영의원), ④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(강은미의원), ⑤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(심상정의의원), ⑥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(장혜영의원), ⑦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(임이자의의원), ⑧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(이수진의의원)

■ 입법안들의 정의로운 전환 구성 요소 :

① 기후위기 극복 과정의 피해 최소화과 권리 최대한 보장 ② 위원회 ③ 기금 조성

■ 노동은 시혜와 보호의 대상.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

Ⅲ.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제 또는 투쟁 과제

1. 노동의 집단적 권리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재편

■ 산적해 있는 과제들

노조할 권리(간접고용/특수고용/플랫폼 노동), 5인 미만 사업장, 산업안전 등

■ 기업별 교섭구조 극복

- ‘보호와 시혜의 대상’인 노동과 ‘개별화되고 분절화’된 노동은 동전의 양면
- 사업장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
- 기업별교섭구조는 노동의 폭넓은 집단적 권리행사, 정치사회적 세력화 제한
- 사용자단체 확대, 교섭의제 확대, 기업 단위 창구단일화제도 폐지, 파업권 보장 등
-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기후 교섭 의제 - 현장조직화 - 기후파업 등의 과정 필요

Ⅲ.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제 또는 투쟁 과제

2. 기후위기로 인한 '사회적 위험'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제

■ 취약계층 보호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

-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머물고 있음
- 새로운 '사회적 위험'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,
삶-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일할 권리를 제도화하는 투쟁

■ 고용에 기반하지 않는 보편적·사회보장 체제 구축

- 시장임금이 사회임금보다 훨씬 높은 구조, OECD 최하위 수준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
- '경제성장-분배' 또는 자신이 속한 '기업의 이윤-임금상승'에 기반한 노동체제
- 끊임없는 경제성장에 대한 동의를 단절하기 위한 전략과 투쟁 필요

Ⅲ.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제 또는 투쟁 과제

3.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및 기후일자리 확보

■ 화석연료 에너지 및 산업의 계획적인 축소와 기후일자리 창출

- 재생에너지, 공공교통, 에너지효율적 건물, 생태적 농림축산어업, 돌봄 일자리 등
- 보편적·공공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일자리
-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성 방식, 규모

(대기업 법인세, 고소득층 소득세, 부동산보유세 인상, 토건 예산과 국방비 감축)

- 사업계획 수립, 예산편성, 집행, 집행결과 평가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 방식은?

(단기적 과제: 기후영향평가,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개입 필요성)

ex. 반면교사. 형식적인 성별영향평가,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 등.

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, 실질화 등